



닭고기 수입개방 이후

양계인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 개방 일정에 따라 미절단·냉장 닭고기와 난황이 완전 개방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양계산업은 경쟁력이 있다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 된다는 속단을 했는가 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 개방이 되어도 일정량의 시장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속 편한 진단을 했던게 사실이다.

개방에 대비하여 본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의 의식구조가 다른 것은 차차하고, 일단 유통구조가 일본인의 편리에 의거 철저히 확립이 되어 있어 수입산물이 국내산으로,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수입물이 그대로 수퍼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도착가격이 국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닭고기의 관세율은 30%이나 양허세를 적용 20%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생산비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닭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놓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실제 수입이 이루어져 국내산이 생산비선이하로 대폭락이 되어야 산업피해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긴급관세내지 조정관세를 고려

할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닭고기 수입제한은 검역을 얼마나 원칙대로 할 것이며, 당국의 의지여하에 달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대량 수요처에 수입자제와 아울러 국내산 사용확대 요청을 내어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차익이 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본회의 요구대로 97년까지 계열화사업 등이 정착되어 국내 양계산업이 자리를 잡아갈 때 까지만이라도 관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준축사설계도

농림수산부가 축협중앙회와 공동으로 각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지난 12월 5일자로 건설부공고 제1992-172호로 인정을 받아 축산농가들이 이 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비용 없이도 계사건축이 가능토록 조치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사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정부에서도 양축농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무허가 축사구제조치를 12월까지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추진해준 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실적에는 미달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법상 축사(계사)라 하더라도 허가대상인 60평 이상의 축사건축시는 평당 건축설계비용이 1만3천원이 들어 3만수 이상의 500평 계사건축시 설계비용만도 6백여만원이 소요되어 왔다. 구제조치 기간에는 150평 이상에 대해서는 4천2백원으로 대폭 낮춰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만 원의 설계비가 추가로 부담되어 구제조치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축산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 제작된 축사표준설계도는 실제 이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양축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설계도의 경우 양계분야는 육계사와 산란계사로 나누었는데 육계사는 1만수, 1만5천수로 하여 각기 2종류로, 산란계사는 1만수, 2만수, 3만수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종전 보다 더욱 세분화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1~2만수 양계업으로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3~5만수 규모의 전업양계업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볼 때 축사표준설계도 또한 적어도 5만수 규모까지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 양축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계**